

Vol. 10 / December. 2022

# RICON FOCUS



##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

- ④ 동의의결제도 개요
- ④ 동의의결제도 국내·외 현황
- ④ 동의의결제도 내용 및 절차
- ④ 동의의결제도 사례 및 평가
- ④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쟁점
- ④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

## 동의의결제도 개요

### 동의의결제도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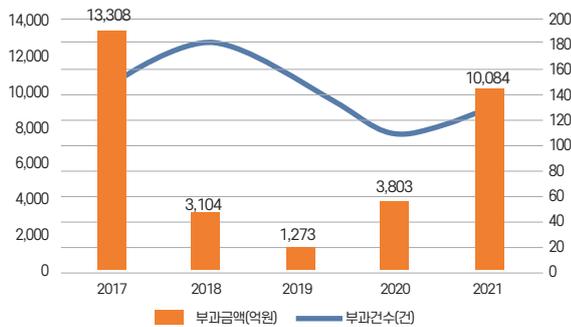
① **동의의결제도(Consent Resolution)**란 경쟁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 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함

- 사업자의 경우 경쟁 당국의 행정제재 면제로 사업 불확실성 제거, 이미지 제고, 시간 및 비용 절약 등 효과
- 소비자 및 경쟁 사업자의 경우 행정제재로 구제받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 배상 등 다양한 보전

②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 분야의 집행력 확보 수단인 행정 및 형사적 제재, 민사적 구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외에 새롭게 나타난 분쟁해결 수단임**

- 행정 및 형사제재는 시정조치·과징금·벌금 등 강력한 집행력 확보 수단이나, 저조한 부과 실적으로 효용성의 한계
- 민사구제는 종국적인 해결 수단이나, 소송 비용 및 기간에 따른 부담으로 피해자 구제의 한계
- ADR은 조정·중재 등을 통한 신속·저비용의 해결 수단이나, 비종국적인 해결 수단으로 불확실성의 한계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현황



주: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소관 법률에 대한 처리 실적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202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기소 건수

연도	고발	기소	기소율(%)
2017	67	57	85
2018	84	64	76
2019	82	39	48
2020	37	28	76
2021	39	19	49
합계	309	207	66.8

- 2019년 4개 사건은 1개의 병합사건으로 무혐의 처리 포함
- 2020년 2개 사건, 2021년 12개의 수사 중 사건 포함

### 동의의결제도 도입 경과

①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는 한·미 FTA 중 경쟁법 분야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2011. 11.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음**

- 2006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목적으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및 ‘대기업 봐주기’의 부정적 여론으로 도입 무산
-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위하여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협정문 작성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
-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동의의결제도 도입

#### 한·미 FTA 협정문 제16장(경쟁)

##### CHAPTER SIXTEEN COMPETITION-RELATED MATTERS

##### ARTICLE 16.1: COMPETITION LAW AND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5.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their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s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the enforcement action. A Party may provide for such agreements to be subject to judicial approval.

##### 제16.1조 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동의를결제도 국내·외 현황

## 동의를결제도 해외 법제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0개국이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1906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 동제도를 도입함

- 미국의 동의명령 및 동의판결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일본(1959년 동의심결), EU(2004년 화해결정), 독일(2005년 의무부담부 협약제도) 등 주요 각국이 경제 및 산업 특성에 따라 도입·운영

주요 국가의 동의를결제도 비교

국가	법률	명칭	대상행위	미이행시 조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4조 c	동의명령(FTC)	모든 행위	FTC 제소(강제집행, 벌금부과)
		동의판결(DOJ)		법무부 기소, 법원발급
EU	Council Regulation 제9조	화해결정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제외	질서위반벌금, 화해결정 취소 후 정식절차 개시
독일	경쟁제한법 제32조 b	의무부담부 협약	모든 행위	질서위반벌금, 의무부담부 협약 취소 후 정식절차 개시
일본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65조	동의심결	독점적 배제조치 (2006년 이전에는 모든 행위)	형벌(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

자료: 송혜진·박희주, “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 19p 수정.

## 동의를결제도 국내 법제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에 도입되었음

- 2022년 “하도급법” 등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일괄 도입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
- 제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에서 도입 논의

⊕ 우리나라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진 신고(leniency), 중대·명백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제재 적용의 형태
- \* 중대·명백한 법 위반행위는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의무 사건

동의를결제도 관련 국내 법제 현황

구분	법률	시행	대상행위	미이행시 조치
도입	공정거래법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11. 12. 02. 2012. 3. 28.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및 카르텔 제외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표시광고법	2014. 04. 29.		
	대리점법	2022. 06. 08.		
	대규모유통업법	2022. 07. 05.		
	가맹사업법	2022. 07. 05.		
	방문판매법	2022. 07. 05.		
	하도급법	2022. 07. 12.		
논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동의의결제도 내용 및 절차

### 동의의결제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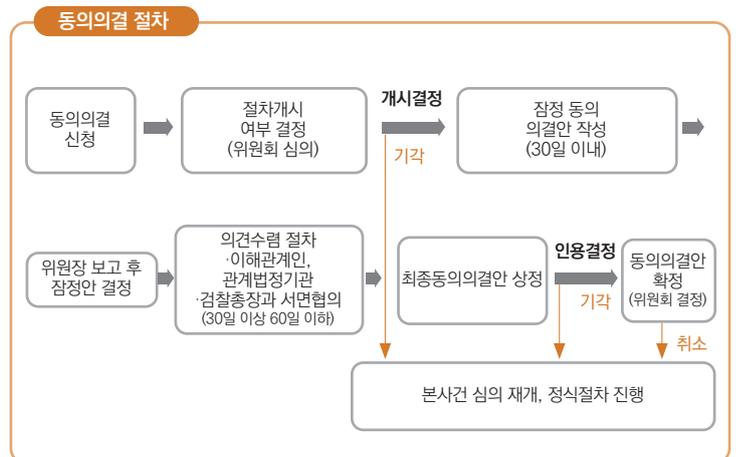
- ④ (신청대상) 동의의결제도의 신청대상은 각 법률 위반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됨
  -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④ (시정방안) 신청인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은 비례의 원칙이 적절성 판단의 기준이 됨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의무
- ④ (확정효과) 동의의결의 확정은 해당행위가 각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행위가 각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
  -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사업자는 동의의결에 따른 성실이행 의무

### 동의의결제도 절차

- ④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보고 → 의견수렴 → 동의의결 최종안 확정 → 이행관리 현황 보고의 절차로 이루어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 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동의의결제도 절차

- (동의의결 신청)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 신청
-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심사관은 14일 이내 동의절차 개시 여부 결정
  -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사건의 조사·심의 절차는 중단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
- (의견수렴 절차) 심사관은 잠정 동의안에 대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검찰총장과 협의
  - 30~60일 이내(실무상 40일)
- (동의의결 최종안 확정) 의견수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여부 확정
- (이행관리 현황 보고) 동의의결 이행관리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보고 의무
  - 동의의결 이행관리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음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의의결제도 사례 및 평가

## 동의의결제도 사례

2011년 “공정거래법”에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2년 10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개의 법률의 동의의결 개시 건수는 총 20건(인용 10건, 기각 8건, 처리중 2건)에 불과한 수준임

동의의결제도 처리 및 인용 현황

구분	'11~'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0	합계
인용	-	4	1	3	-	-	-	1	1	-	10
기각	-	2	-	1	1	2	1	-	1	-	8
처리중	-	-	-	-	-	-	-	-	-	2	2
합계	-	6	1	4	1	2	1	1	2	2	20

연번	사건번호	의결번호	사건명	의결일
1	2020서감1790	의결2021-074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2021.03.16
2	2020제감0509	의결2020-132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2020.05.28
3	2016안정1911	의결2016-280	(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2016.09.29
4	2016안정1910	의결2016-281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2016.09.29
5	2016안정1912	의결2016-279	(주)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2016.09.29
6	2015기결2010	의결2015-316	마이크로소프트(MS)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2015.08.24
7	2014서감2571	의결2014-272	에스에이피코리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2014.12.04
8	2014서감0596	의결2014-103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2014.05.08
9	2014서감0595	의결2014-103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2014.05.08
10	2014서감0594	의결2014-104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2014.05.0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자료

## 동의의결제도 평가

동의의결제도는 IT산업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집행수단에 적합할 것으로 평가됨

- IT산업은 기술 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어려운 상황
- 기업결합의 경우 장래의 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사업자의 시정방안을 토대로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가능
-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과 같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 보상 가능

다만,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법률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도입·운영되면서 실용성에 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각 법률의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

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
방문판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판매법 위반 주요 행위는 독점규제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달리 사업자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여 적합한 시정조치 및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li> <li>-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 또는 영세한 사업자이며, 재화 등의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사업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관계된 사안이 아닌 사업자와 특정 개인 간의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li> </ul> </li> </ul>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의결 신청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등의 신청으로 개시되는데,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동의의결제보다 당사자 간 합의(조정) 등이 더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방안</li> <li>- 하도급 분야는 분쟁조정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편으로 2020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 분야 조정사건(총 897건) 중 조정성립률은 74%에 이르며,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2019년 기준 평균 49일에 불과</li> <li>- 반면,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의견 수렴, 본 사건 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하므로 상당 시일이 소요되며, 실제 동의의결 운영 사례의 처리기간을 살펴본 결과 개시 신청부터 최종 동의의결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0일 이상인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는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li> </ul> </li> </ul>

##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쟁점

### 건설하도급 행정제재 및 권리구제 수단

④ 2022. 1. 11.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22년 12월 기준 건설하도급 분야 동의의결제도는 1건(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④ 건설업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해결방안은 행정 및 형사적 제재, 민사적 구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 분쟁조정협의제도를 두고 있음

- 행정 및 형사제재는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이 있으며, 특히 직전 3년간 벌점의 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5점), 영업정지(10점) 요청이 가장 강력한 집행수단으로 작용

- 민사구제는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나, 소송 비용과 기간에 따른 부담으로 저조한 실정

- 분쟁조정협의제도는 민사구제의 대안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정 실적은 약 64%

####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의 사례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신청 관련 시정방안의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 추가위탁 시점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전액 및 법정 이자 지급
- 민사상 손해배상
  - 부당특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및 법정 이자 지급
- 하도급법 교육 이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하도급법 교육 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21)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실적

연도	조정성립(건)	조정불성립(건)	합계(건)	조정성립비율(%)
2017	5	41	46	11
2018	258	74	332	78
2019	364	78	442	82
2020	307	80	387	79
2021	255	99	354	7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2021)

###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적용 문제

④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는 오히려 분쟁조정제도를 위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할 요인이 큰 상황임

- 건설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대부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분쟁조정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해결(평균 49일)이 가능하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할 경우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제도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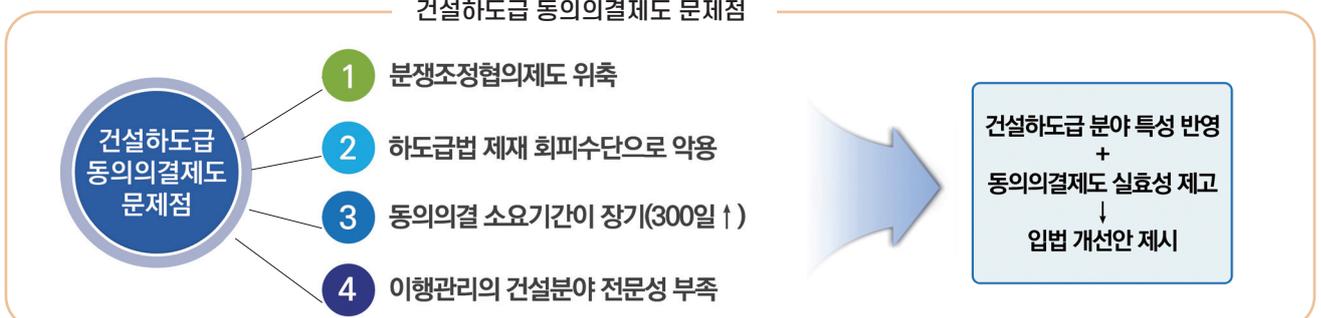
- 동의의결제도를 통하여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 무엇보다 동의의결제도가 인용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으나, 시정방안은 정상적 행위 대비 매우 미흡

④ 또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기관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건설하도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이행관리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OECD(2016)는 동의의결제도에 있어 이행관리(monitoring)가 매우 중요하며, 시정방안의 유형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관리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문제점



# 건설하도급 동의를결제도 개선방안

## 건설하도급 동의를결제도 적용 방향

- ①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을 중심으로 분쟁조정협의제도를 통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의 동의를결제도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2022. 1. 11. 도입된 소송중지 제도를 원용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방해할 목적의 동의를결제도 배제 필요
  - 동의를결제도는 당사자간 이견으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가 높은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 적용 필요
- ② **동의를결제도는 사업자의 시정방안으로 위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시정방안 마련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35조 제2항)을 원용하여 3배 이내의 손해배상으로 현실화 필요

## 건설하도급 동의를결제도 개선 입법안

- ① **건설하도급 동의를결제도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정방안으로 원용하고, 원사업자가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동의를결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소송중지제도를 준용함**
  - 또한, 현행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하여 동의를결 이행관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②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의9(동의를결) ① (생략)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제24조의10(동의를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를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신설>	제24조의9(동의를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b>이 경우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은 제3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b>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10(동의를결의 절차 및 취소) ① 동의를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② <b>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의를결을 신청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4조의8에서 ‘소’와 ‘소송’은 ‘동의를결’로, ‘수소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b>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수탁기관의 지정)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제90조제7항, 제10항 및 방문판매법제50조의3제7항, 제10항에 따라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공정거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3. <신설>  ② ~ ③ (생략)	제14조의2(수탁기관의 지정)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제90조제7항, 제10항 및 방문판매법제50조의3제7항, 제10항에 따라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공정거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3. <b>「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b>  ② ~ ③ (현행과 같음)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FOCUS | Vol. 10 / December. 2022

발행일 2022. 12

발행인 유일한

발행위원 홍성진, 박선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http://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19-2007-17호)